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이 병 희**

I. 머리말

노동소득분배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없다. 측정방식에 따라 수준과 추세가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과 OECD가 공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차이는 매우 크다.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하락폭이 아주 적다. 반면 OECD가 공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년간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내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홍민기, 2013; 김배근, 2013; 주상영·전수민, 2014).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일자리와 소득의 변동이 큰 우리나라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영 소득에서 노동 소득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제II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을 둘러싼 쟁점을 소개하고, 각각의 측정방법별로 수준과 추세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보정방식을 제안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산업의 생산 비중 증가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면 이를 노동-자본소득 간 불균형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다(de Serres, Scarpetta, and Maisonneuve, 2002; Arpaia, Pérez, and Pichelmann, 2009). 산업 간 노동소득분배율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산업구성의 변화는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변화율에 총합 편의(aggregation bias) 또는 구성 편의(composition bias)를 야기할 수 있다. 제III장에서는 변화-구성요인 분해(shift-share analysis)를 수행하여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대부분이 산업 내에서 발생하였음을 보일 것이다.

* 이 글은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의 일부임을 밝힌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lbh@kli.re.kr).

자영 비중의 차이를 조정하면 국가 간 노동소득분배율의 차이가 대부분 사라진다는 주장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OECD의 자영자 혼합소득의 보정방법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 측정함을 보이고, 이 글에서 제안한 보정방법으로 추계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음을 제Ⅳ장에서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 보정방법을 이용하여 자본소득과 소득계층별 노동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 점유율이 하락하고 임금소득 하위 90% 계층의 노동소득 점유율도 하락한 반면, 임금소득 상위 10% 계층의 노동소득 점유율은 증가하고, 자본소득 점유율은 더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인다.

Ⅱ.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쟁점과 추이

1. 측정 쟁점

분배 측면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는 두 가지의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분모에 사용하는 국민소득으로 어떤 소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 국내총부가가치(GVA), 요소비용 국민소득(NI)이 자주 사용된다.

그 차이를 살펴보자. 국내의 각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합한 국내총생산(GDP)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로 구성된다. 분모에 국내총생산을 사용하면 순생산 및 수입세와 고정자본소모를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에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공제한 순생산 및 수입세는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고 누구에게 분배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OECD는 국내총생산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를 제외한 총부가가치(GVA)를 사용한다. 자본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정자본소모를 자본에 대한 요소소득으로 간주한 것이다.¹⁾ 한편 한국은행에서는 가장 좁은 범위의 요소비용 국민소득(NI)을 사용한다. 즉 국내총생산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와 고정자본소모 모두를 제외한다.

1) Ryner(2012)는 분자에 포함되는 연금 및 사회보험료가 노동의 재생산비용이므로 자본의 대체비용인 고정자본소모를 분모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표 1〉 다양한 국민소득 개념

계정	항목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	
국내총생산(GDP)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	
국내총부가가치(GVA)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국민총소득(GNI)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	국외 순수취요소소득
국민순소득(NNI) =시장가격 국민소득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국외 순수취요소소득
국민소득(NI) =요소비용 국민소득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국외 순수취요소소득

따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국민소득에 분배국민소득의 구성항목을 많이 포함할수록, 즉 GDP, GVA, NI 순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작게 측정된다. 또한 국민총소득에서 고정자본소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어떤 국민소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간 차이는 커지게 된다.

둘째, 분자에 사용하는 노동소득을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이냐이다. 한국은행에서는 비용자보수를 사용한다. 비용자보수에는 근로자가 수행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현금 및 급여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비용자보수로 한정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인 개인 영업잉여를 모두 자본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혼합된 소득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방식으로 측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과소 측정된다.²⁾

2. 측정 방법과 추이

다양한 측정방법별로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추이를 살펴본다. 이때 한국은행 방식과의 비교를 위해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분모로 사용하였다.

한국은행 정의에서는 자영업자 소득의 전부를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자영업 비중의 감소를 고려하지 못한다.³⁾ 자영업자의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을 추정하여 보정한 노동소득분배율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한국은행의 통계를 임금소득분배율이라고 부

2) 1993년 SNA에서는 가계 비법인기업의 경우 영업잉여 대신에 혼합소득(mixed inc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가계 구성원이 소유하는 비법인기업에서 생산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에는 비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행(2010, p.62, p.230).

3) $\frac{\text{비용자보수}}{\text{요소비용국민소득}}$

른다(WS로 표기한다).

Gollin(2002)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과소 측정된다고 비판하며, 세 가지 조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영업잉여 모두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LS1). 이 방법에서는 자영업자가 자본을 보유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 측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⁴⁾

둘째, 자영업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구성 비중이 다른 경제 부문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LS2). 개인영업잉여를 제외한 국민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할 수 있다.⁵⁾ 개인기업으로 구성된 자영업이 법인기업이나 정부 부문 등의 다른 경제 부문과 기능적 소득분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이 방법은 자영업이 노동소득 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을 함께 획득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생산활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다소 과소 측정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자영업자의 평균 임금소득과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LS3). 이는 임금근로자 규모에 대한 통계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구하고, 이를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으로 대신하는 방법이다.⁶⁾⁷⁾ 무급가족종사자는 정의상 노동소득이 전혀 없지만 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한다.

[그림 1]은 측정방법별로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은행 방식의 WS는 네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반영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훨씬 높게 측정된다.⁸⁾

또한 한국은행의 임금소득분배율은 1996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든 LS1~LS3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고점의 수준에 비해 13~15%p 내외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4)
$$\frac{\text{피용자보수} + \text{개인영업잉여}}{\text{요소비용국민소득}}$$

5)
$$\frac{\text{피용자보수}}{\text{요소비용국민소득} - \text{개인영업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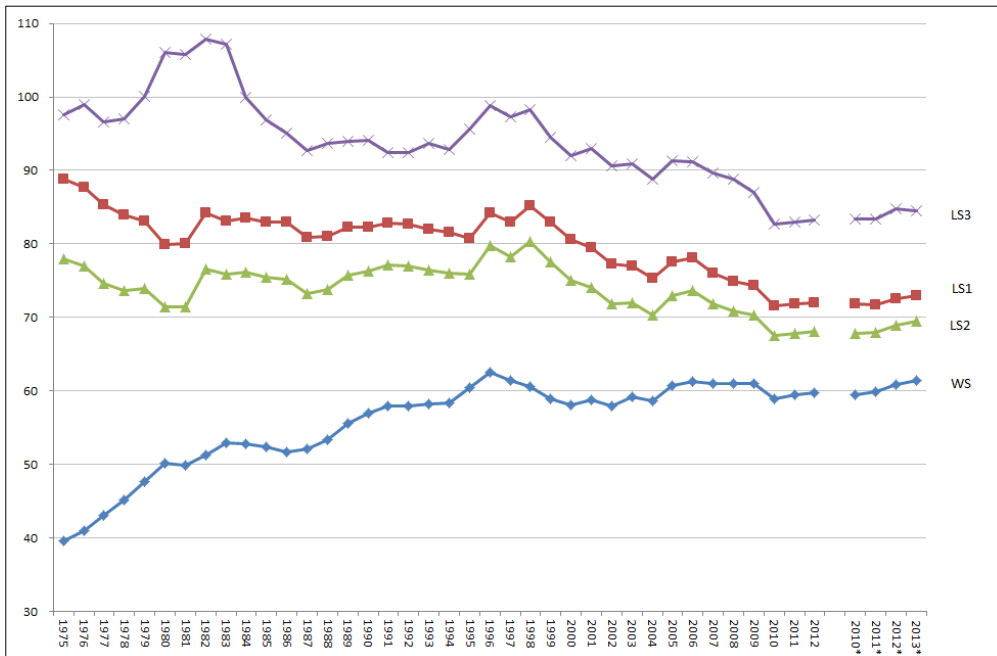
6)
$$\frac{\text{피용자보수} + (\text{피용자보수} / \text{임금근로자수} \times \text{비임금근로자수})}{\text{요소비용국민소득}}$$

7) 또는
$$\frac{\text{피용자보수}}{\text{요소비용국민소득}} \times \frac{\text{취업자수}}{\text{임금근로자수}}$$

8) 이 외에도 자영업자 소득의 2/3를 노동소득으로, 1/3을 자본소득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Johnson(1954)이 제안한 이후로 미국에서는 이 방법이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Krueger, 1999). 그러나 노동과 자본이 각각 2/3와 1/3을 나누어 가지는 현상은 20세기 중반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역사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피케티 통계에 의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림 1) 다양한 측정방법에 의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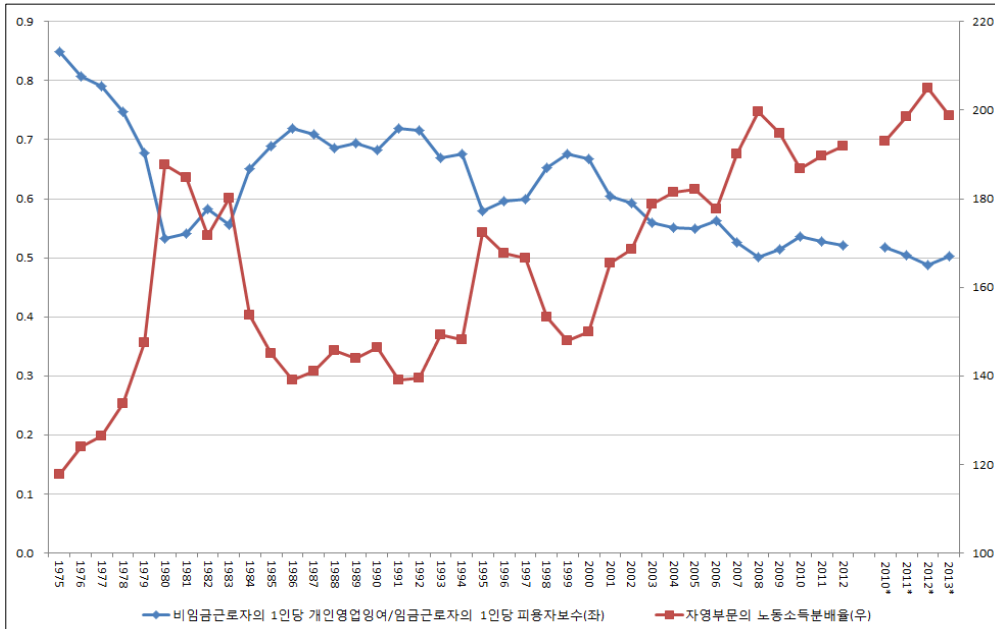
주 : *는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로 전환하고 연도를 2010년으로 개편한 통계임.

OECD는 자영업 고용 비중을 고려하여 LS3의 방법을 사용해 국제비교 통계를 작성한다. 그러나 LS3의 추이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100%를 상회하는 시기가 존재한다. 이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평균소득의 차이가 클 때 발생한다. [그림 2]를 보면, 비임금근로자의 1인당 영업잉여는 통계 확보가 가능한 1975년 이후 근로자의 1인당 피용자보수에 비해 항상 낮기 때문에 비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과 동일하다는 가정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 측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LS3을 이용하여 산출한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은 개인 영업잉여보다 훨씬 커서, 2013년에 자영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에 이르는 오류가 발생한다.

LS3에 의해 노동소득으로 간주되는 자영소득이 개인영업잉여보다 큰 현상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개인영업잉여 전체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LS1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 측정하는 문제를 가진다. 자영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경제 부문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LS2는 노동집약적인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자영소득 가운데 얼마가 노동소득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에 가장 부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⁹⁾

9) 주상영·전수민(2014)도 한국의 고용구조에 비추어 LS2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무기(1984)도 비농림어업부문 비법인기업의 노동소득을 LS2의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2] 비임금근로자의 상대 노동소득과 자영업부의 노동소득분배율



주 : *는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로 전환하고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개편한 통계임.

LS2 방법에 따라 조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은 SNA 2008 기준으로 2013년 69.5%를 기록한다. 장기적인 시계열 관측이 가능한 SNA 1993을 기준으로 하면, 조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8%에서 2012년 68.1%로, 11.7%p 하락하였다.¹⁰⁾

Ⅲ.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변화-구성요인 분해(shift-share decomposition) 방법을 적용하였다. 산업별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출할 때도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국민계정에서는 산업별 개인영업잉여 통계를 제공하

10) 2012년 요소비용 국민소득 975조 원 가운데 피용자보수와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을 합한 금액은 663조 원이다. 만약 LS2 방법에 따라 조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이 1996년 수준을 유지하였다면 노동소득은 778조 원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는 115조 원이 자본소득으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간으로는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이 0.7%p 감소하였으며, 2012년 요소비용 국민소득 기준으로 하면 매년 7.2조 원의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으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한다.

지 않기 때문에, 앞서 LS2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산업별 부가가치와 고용통계를 함께 사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¹¹⁾

$$LS_t = \frac{CE_t}{GVA_t} \frac{N_t}{E_t} = \sum_{n=1}^k \frac{GVA_{nt}}{GVA_t} \frac{CE_{nt}}{GVA_{nt}} \frac{N_{nt}}{E_{nt}} = \sum_{n=1}^k v_{nt} LS_{nt}$$

식에서 n 은 산업, t 는 연도, CE 는 피용자보수, GVA 는 총부가가치, N 은 취업자 수, E 는 임금근로자 수를 말한다. $v_{nt} = \frac{GVA_{nt}}{GVA_t}$ 는 산업 n 의 부가가치 비중이며, LS_{nt} 는 비임금근로자 규모를 고려하여 보정한 산업 n 의 노동소득분배율이다. 즉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에 산업별 생산비중을 가중하여 구한 합으로 표현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Delta LS_t = \sum_{n=1}^k \Delta v_{nt} LS_{nt} + \sum_{n=1}^k v_{nt} \Delta LS_{nt}$$

위 식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우변 첫째 항에 나타난 산업 구성 변화의 효과와 둘째 항에 나타난 산업 내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효과로 구성된다. 전자는 경제 전체 노동소득변화를 변화에서 구성 편의에 설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부가가치, 피용자보수와 고용 통계가 필요하다. 우선 국민계정의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표에서 산업별 총부가가치(GVA)¹²⁾와 피용자보수를 사용하였다.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SNA 1993 기준의 통계를 사용하였다. 한편 산업별 고용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계정의 산업분류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준산업분류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계정의 대분류 산업(16부문)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준산업분류를 대응시켰다. 표준산업분류(9차)를 사용하는 2008년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권우현 외(2012: 145~148)가 제시한 국민계정 중분류와 표준산업분류(9차) 연계표를 사용하였다. 그 이전인 2000~2007년의 표준산업분류 8차 분류, 1993~1999년의 6차 분류는 각각 9차 중분류 수준에서 연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

11) 미국 노동통계국(BLS)도 자영자의 노동소득을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 보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한다(BLS, 1997: 92). 이는 앞서의 LS3 방법을 산업별로 적용하여 구한 값에 산업별 생산비중을 가중하여 구하는 방법이다(이하에서 LS4로 표기한다). 이러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앞서의 LS3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노동소득으로 간주되는 자영소득이 개인영업잉여를 상회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

12) 총부가가치에는 순기타생산세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구하였다.

〈표 2〉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요인분해

1996년 노동소득분배율(A)	0.738	
2011년 노동소득분배율(B)	0.653	
전체 변화(B-A)	-0.085	(100.0)
산업 내 분배율 변화	-0.076	(90.0)
산업구조 변화	-0.008	(10.0)

수와 임금근로자 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자영자 소득을 고려한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출할 때, 홍민기(2014)에서처럼, 보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이 1을 넘지 않는 제한을 두었다.¹³⁾

〈표 2〉는 1996~2011년 국민계정 산업대분류별 16개 부문을 대상으로 요인분해한 결과다. GVA 기준에 LS4 방법으로 보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3.8%에서 2011년 65.3%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하락은 산업 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90%를 설명하고 있다.

〈표 3〉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기여

	노동소득분배율		GVA 비중		변화-구성 요인분해	
	1996	2011	1996	2011	산업 내 분배율변화	산업구조 변화
농림어업	1.000	1.000	0.058	0.026	0.000	-0.031
광업	0.398	0.389	0.004	0.002	0.000	-0.001
제조업	0.688	0.550	0.259	0.314	-0.039	0.034
전기, 가스, 수도사업	0.253	0.321	0.020	0.019	0.001	0.000
건설업	0.831	0.962	0.103	0.059	0.011	-0.040
도소매음식숙박업	1.000	0.760	0.118	0.111	-0.027	-0.007
운수 및 보관업	0.804	1.000	0.044	0.037	0.008	-0.006
금융보험업	0.634	0.405	0.064	0.070	-0.015	0.003
부동산 및 임대업	0.132	0.112	0.087	0.067	-0.002	-0.002
정보통신업	0.678	0.633	0.037	0.039	-0.002	0.001
사업서비스업	0.793	0.735	0.043	0.053	-0.003	0.00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766	0.653	0.056	0.063	-0.007	0.005
교육서비스업	1.000	1.000	0.052	0.061	0.000	0.00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866	0.786	0.022	0.045	-0.003	0.019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0.796	0.927	0.011	0.013	0.002	0.002
기타서비스업	1.000	1.000	0.021	0.019	0.000	-0.001
전체	0.738	0.653	1.000	1.000	-0.076	-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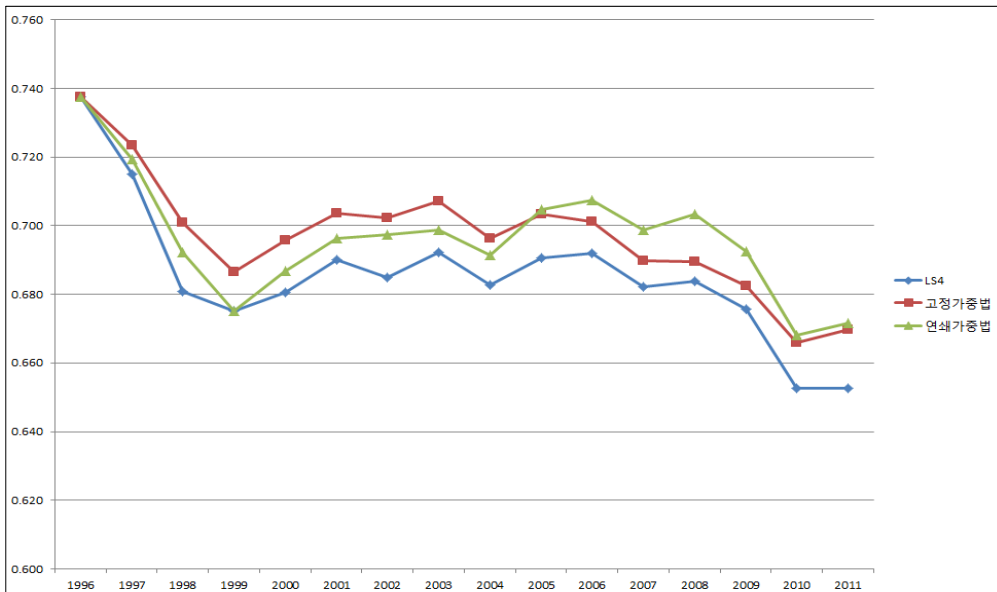
13) 농림어업, 도소매업(1990년대 후반), 운수 및 보험업(2008년 이후),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등에서 자영자 소득을 보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이 1을 넘기 때문에 상한을 두었다.

한편 <표 3>은 산업별로 요인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부가가치 비중이 늘어난 산업이 반드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 비중이 늘어난 산업 가운데 금융보험업,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보다 낮은 수준이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등은 전체보다 높다. 둘째, 제조업은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났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하락하고 있다.

산업별 부가가치의 구성 비중을 통제하였을 때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개별산업의 부가가치 구성 비중을 고정하여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는 고정가중법을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1996년을 기준연도로 하였다. 김배근(2013)이 지적하듯이, 고정가중법은 비교연도가 기준연도에서 멀어질수록 가중치가 실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연쇄가중법을 사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추가로 측정하였다. 산업별로 전년도의 생산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매 연도의 전년대비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율(연환지수)을 산출하고, 다음으로 각 연도의 연환지수를 누적적으로 곱하여 매기의 연쇄지수를 도출, 기준연도의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에 곱하여 매기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한다.

[그림 3]을 보면, 산업별 부가가치의 구성 비중을 통제하였을 때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폭이 약간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하락추세를 보인다. 연쇄가중법을 사용하여 구성효과를 조정하였을 때 2011년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에 비해 6.6p 하락하였다.

[그림 3] 산업구성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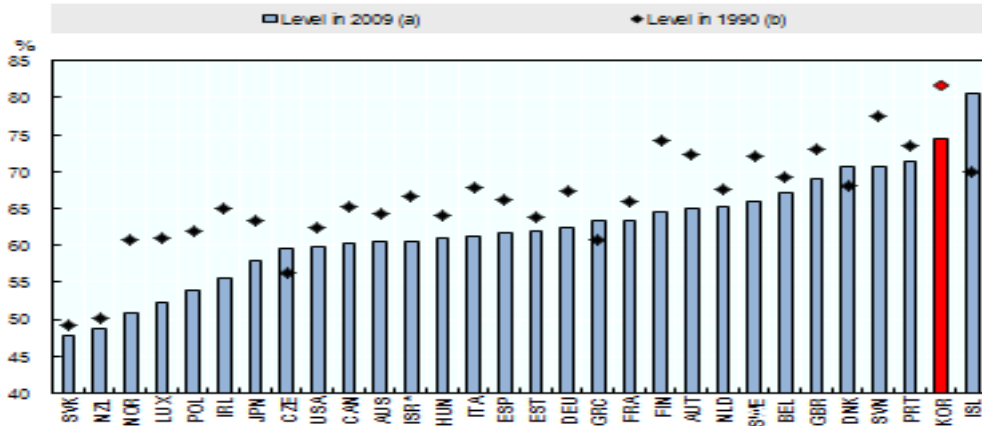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은 산업구조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¹⁴⁾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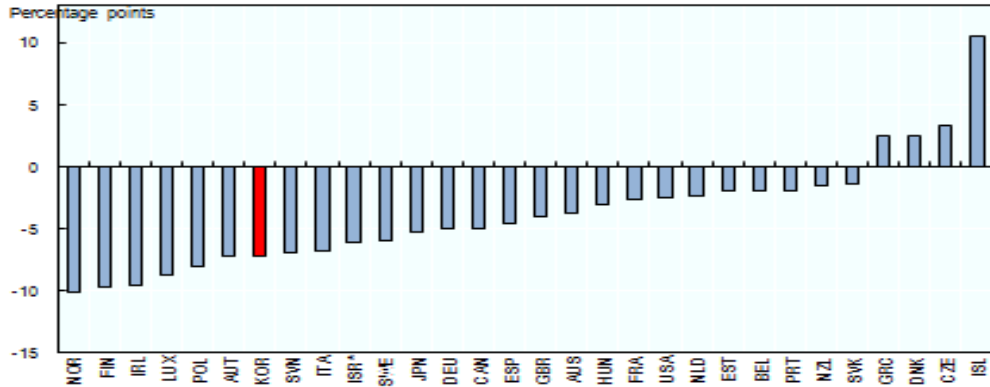
IV.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비교

OECD가 공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림 4]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국가 30개국 가운데 둘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년간 노동소득분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락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일곱째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다.

[그림 4] OECD의 노동소득분배율 국제비교 : 1990~2009



- 14) 홍민기(2014)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요인분해를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 내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에 의한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산업별 생산구조의 변화에 의한 효과보다 나머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다르지 않다. 김배근(2013)은 구성효과를 통제한 임금소득분배율을 제시하고 있다. 구성효과를 통제하고서도 1996~2010년 동안 임금소득분배율은 하락하였다.
- 15) 반면 26개국을 대상으로 1990~2007년에 걸친 민간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를 분석한 OECD (2012)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산업 내 노동 몫의 감소 때문이지만, 한국과 덴마크에서는 산업구조변화가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분석자료로 사용한 EUKLEMS에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비중 통계가 산업별로 나누지 않고 서비스산업 모두에 동일한 값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OECD의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자료 : OECD(2012).

OECD의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은 분모에 GVA를 사용하고, 자영업자의 1인당 노동소득이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LS3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정한 것이다. <표 4>에서 GDP 가운데 순생산물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간 수준이기 때문에 GVA의 사용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높게 측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고용 비중이 둘째로 높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1인당 개인영업잉여를 임금근로자의 1인당 피용자보수와 비교한 상대소득이 일본, 룩셈부르크에 이어 가장 낮은 나라로 나타난다. 이처럼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 상대소득이 낮기 때문에, LS3의 방법에 따라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추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표 4> OECD 국가들의 비임금근로자 고용비중과 상대소득

	GDP 구성비중					비임금근로자	
	피용자 보수	법인 영업잉여	개인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순생산물세	고용 비중	상대소득
AUS	0.487	0.175	0.079	0.160	0.099	0.109	1.37
AUT	0.502	0.129	0.098	0.161	0.109	0.158	1.04
BEL	0.526	0.127	0.062	0.180	0.105	0.161	0.62
CAN	0.507	0.223		0.168	0.101	0.090	
CHL	0.372	0.400		0.123	0.105	0.238	
CZE	0.431	0.167	0.114	0.194	0.094	0.181	1.20
DNK	0.552	0.144		0.166	0.139	0.060	
EST	0.463	0.230	0.037	0.147	0.122	0.085	0.86
FIN	0.519	0.133	0.056	0.163	0.128	0.121	0.79
FRA	0.534	0.126	0.061	0.142	0.138	0.096	1.08

〈표 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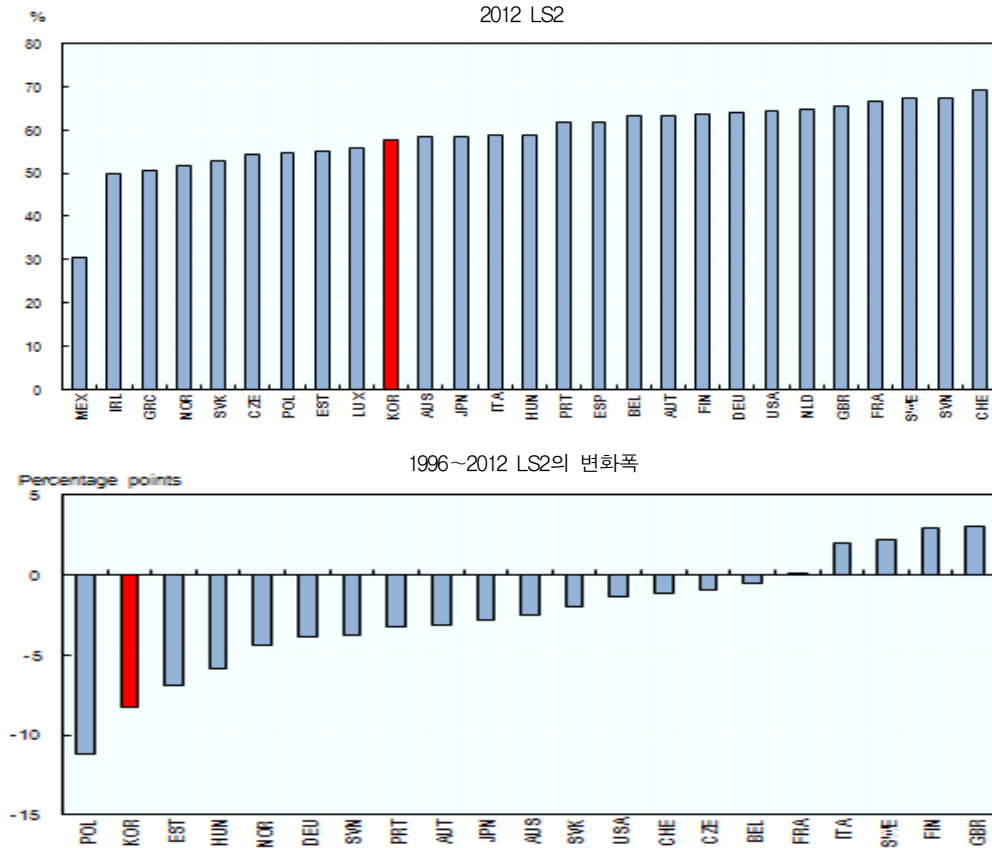
	GDP 구성비중					비임금근로자	
	피용자 보수	법인 영업잉여	개인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순생산물세	고용 비중	상대소득
DEU	0.516	0.141	0.089	0.151	0.103	0.109	1.40
GRC	0.330	0.145	0.195	0.218	0.112	0.347	0.97
HUN	0.448	0.146	0.083	0.167	0.155	0.079	2.17
ISL	0.546	0.171		0.154	0.130		
IRL	0.421	0.319	0.059	0.100	0.093	0.165	0.71
ISR	0.456	0.274		0.132	0.138		
ITA	0.427	0.122	0.134	0.178	0.139	0.234	1.03
JPN	0.519	0.157	0.034	0.212	0.079	0.135	0.42
KOR	0.458	0.208	0.094	0.129	0.110	0.282	0.52
LUX	0.482	0.254	0.026	0.126	0.112	0.095	0.52
MEX	0.270	0.497	0.082	0.115	0.036	0.275	0.80
NLD	0.516	0.132	0.100	0.149	0.104	0.147	1.13
NZL	0.445	0.294		0.141	0.120	0.162	
NOR	0.449	0.283	0.033	0.139	0.096	0.059	1.17
POL	0.361	0.193	0.215	0.106	0.125	0.224	2.07
PRT	0.481	0.107	0.102	0.190	0.121	0.143	1.27
SVK	0.379	0.149	0.199	0.191	0.082	0.154	2.88
SVN	0.524	0.085	0.095	0.167	0.128	0.184	0.80
ESP	0.469	0.125	0.151	0.164	0.091	0.141	1.96
SWE	0.538	0.127	0.033	0.133	0.169	0.052	1.13
CHE	0.603	0.090	0.095	0.179	0.032	0.111	1.24
GBR	0.538	0.164	0.057	0.112	0.128	0.151	0.60
USA	0.531	0.145	0.103	0.157	0.066	0.066	2.76

주 : 2012년 또는 그에 가장 근접한 해의 통계임.
 자료 : OECD.StatExtracts에서 필자 분석.

자영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경제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채택하여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추계하는 LS2의 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 비교 통계를 산출하였다. LS2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영업잉여 정보가 필요하다. OECD National Accounts DB에 개인영업잉여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2012년 기준의 보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을 추계하였다.

[그림 5]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비교대상국가 27개국의 단순 평균에 비해 낮으며, 열째로 낮은 나라에 해당한다. 또한 1996~2012년 간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폭을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국가 21개국 가운데 둘째로 하락폭이 크다.

[그림 5]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비교



주: 2012년은 당해연도 또는 그에 가장 근접한 해의 통계임.
 자료: OECD, StatExtracts에서 필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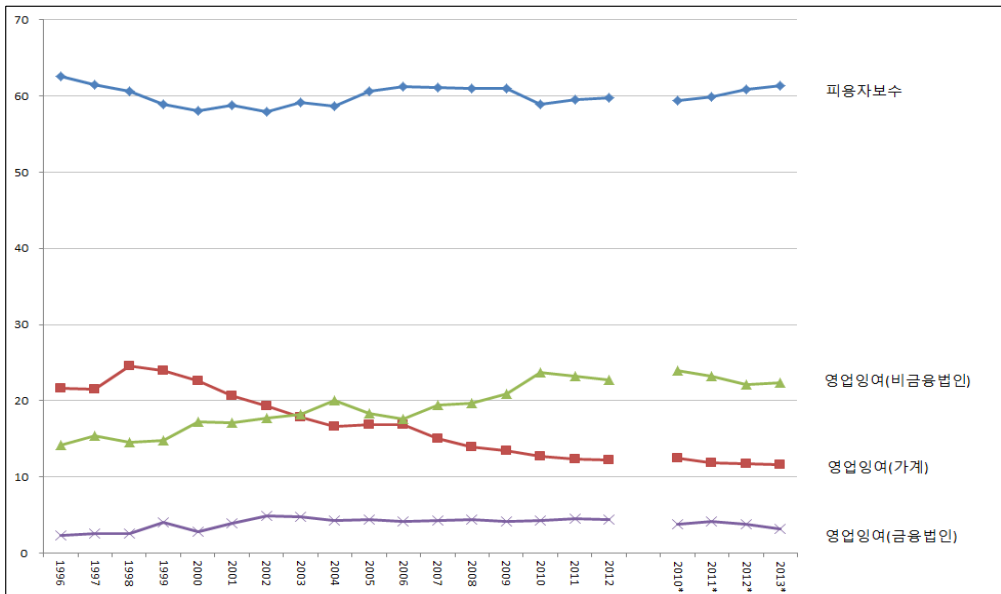
V. 노동소득분배율과 계층별 소득점유율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일차적으로 자영 부문의 감소와 소득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은 피용자보수와 제도부문별 영업잉여가 요소비용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임금근로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¹⁶⁾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영업잉여는 1996년 21.6%에서 2012년 12.3%로 급감하였다. 반면 법인 부문의 영업잉여는 14.2%에서 22.7%로 증가하였으며, 금융법인의

16)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63.3%에서 2012년 71.8%로 증가하였다.

[그림 6] 요소비용 국민소득의 구성항목별 비중

(단위 : %)



주 : *는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로 전환하고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개편한 통계임.

영업잉여도 2.3%에서 4.4% 증가하였다. 즉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자영 부문의 쇠락과 함께 법인 이윤소득의 증가가 함께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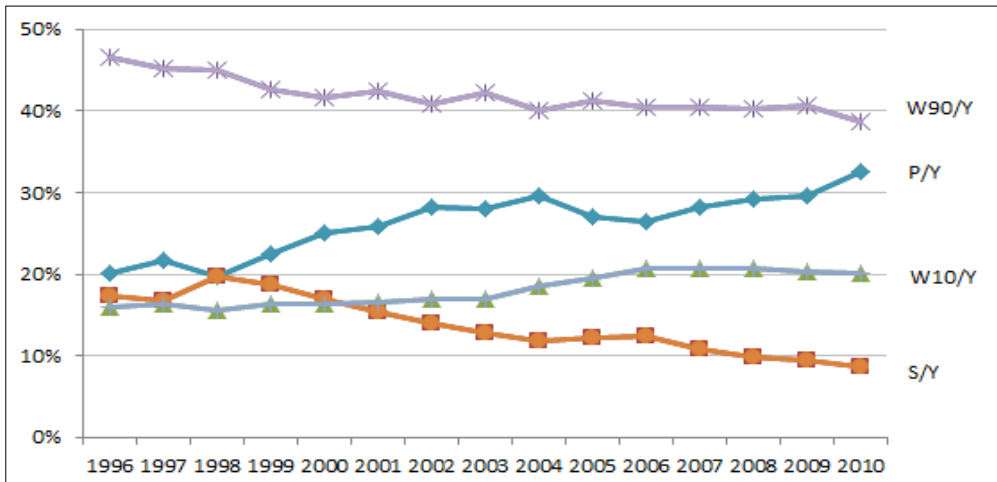
국민소득은 자본소득 P 과 계층별 노동소득(상위 10% 근로자 집단의 임금소득 W_{10} 과 나머지 90% 근로자 집단의 임금소득 W_{90} ,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 S)의 합으로 구성된다. $Y = P + S + W_{10} + W_{90}$.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전환할 수 있다. $\frac{W_{90}}{Y} = 1 - \frac{P}{Y} - \frac{S}{Y} - \frac{W_{10}}{Y}$, 이때 P/Y 는 국민소득에서 자본의 몫이다. 전체 소득에서 임금소득 상위 10%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임금소득 중 10% 집단의 임금소득 비중을 임금소득분배율을 곱한 값으로 바꿀 수 있다. $\frac{W_{10}}{Y} = \frac{W_{10}}{W} \cdot \frac{W}{Y}$. 이때, 임금소득 상위 10% 집단의 노동소득 비중 $\frac{W_{10}}{W}$ 은 김낙년(2012)에서 그 값을 얻을 수 있다.¹⁷⁾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본소득과 계층별 노동소득의 비중을 제시한 것이 [그림 7]이다. 임금소득 하위 90%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46.6%에서 2010년 38.8%로 7.8%p 하락하였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7.3%에서 8.6%로

17) 피용자보수는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현물급여와 고용주 사회부담금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 글에서는 현물급여, 고용주 사회부담금의 집중도도 임금 및 급여의 집중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하락하였다. 반면 임금소득 상위 10% 집단의 비중은 16.0%에서 20.1%로 4.1%p 증가하였으며, 자본소득의 비중은 20.2%에서 32.5%로 12.3%p 증가하였다. 이는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보다는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자본소득과 계층별 노동소득 점유율의 추이



VI. 소 결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을 둘러싼 쟁점을 소개하고,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일자리와 소득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영 소득에서 노동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영 소득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영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부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부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추계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8%에서 2012년 68.1%로 하락하였다.

둘째, 자본집약적이거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산업구조로의 변화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변화-구성요인 분해의 분석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대부분이 산업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연쇄가중법을 적용하여 산업구조변화를 통제하였을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본집약도가 높아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제조업에서 하락폭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는 서비스화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셋째, 비임금근로자의 1인당 노동소득이 임금근로자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사용하여 추계하는 OECD 통계는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 측정한다. 자영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경제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채택하여 추계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비해 낮아서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OECD 통계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또한 1996~2012년에 걸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하락폭이 둘째로 크게 나타난다.

넷째, 국민소득을 자본소득, 자영소득, 상위 10% 계층의 임금소득, 상위 90% 계층의 임금소득으로 나누어 외환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국민소득 가운데 자영소득의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임금소득 하위 90%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였다. 반면 임금소득 상위 10% 집단의 비중은 증가하고, 자본소득 점유율은 더 크게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었지만,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이 더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낙년(2012),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18(2), pp.125~158.
- 김배근(2013),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분석』 19(3), pp.1~48.
- 배무기(1984),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분배율 추계』, 『경제논집』 23(4), pp.389~418.
- 주상영·전수민(2014),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사회경제평론』 43, pp.31~65.
- 한국은행(201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 홍민기(2013), 『노동소득분배의 추이와 영향』, 이병희·홍민기·이현주·강신욱·장지연,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14),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노동리뷰』 109, pp.50~62.

Arpaia, Alfonso, Esther Pérez, and Karl Pichelmann(2009), “Understanding Labour Income Share Dynamics in Europe”, *Economic Papers* 379, Directorate General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European Commission.

- BLS(1997), *BLS Handbook of Methods*,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Labor.
- de Serres, Scarpetta, and Maisonneuve(2002), “Sectoral Shift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ow They Affect Aggregate Labour Shares and the Properties of Wage Equation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26.
- Gollin, Douglas(2002),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2), pp.458~474.
- Johnson, D. Gale(1954),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1850-1952,”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5(2), pp.175~182.
- Krueger, Alan(1999), “Measuring Labor's Shar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9(2), pp.45~51.
- OECD(2012), “Labour Losing to Capital: What Explains the Declining Labour Share?”,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 Picketty, Thomas(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yner, Magnus (2012), “The (I)PE of Falling Wage-Shares: Situating Working Class Agency”,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Inaugural Conference of the Sheffield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The British Growth Crisis: The Search for a New Model’, Sheffield, UK, July 17, 2012.

〈부표 1〉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 %)

	임금소득분배율 (WS)	보정 노동소득분배율 (LS2)
1975	39.6	78.0
1976	41.0	77.0
1977	43.1	74.7
1978	45.1	73.7
1979	47.7	73.9
1980	50.1	71.4
1981	49.8	71.5
1982	51.3	76.5
1983	53.0	75.8
1984	52.9	76.2
1985	52.4	75.5
1986	51.7	75.2
1987	52.1	73.2
1988	53.4	73.8
1989	55.6	75.8
1990	57.0	76.3
1991	58.0	77.1
1992	57.9	77.0
1993	58.2	76.4
1994	58.4	76.1
1995	60.4	75.9
1996	62.6	79.8
1997	61.4	78.2
1998	60.6	80.4
1999	59.0	77.6
2000	58.1	75.0
2001	58.8	74.1
2002	58.0	71.9
2003	59.2	72.0
2004	58.7	70.4
2005	60.7	73.0
2006	61.3	73.7
2007	61.1	71.9
2008	61.0	70.9
2009	60.9	70.4
2010	58.9	67.5
2011	59.5	67.9
2012	59.7	68.1
2010*	59.4	67.9
2011*	59.9	67.9
2012*	60.9	68.9
2013*	61.4	69.5

주 : *는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로 전환하고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개편한 통계임.